

의안 번호	4559
----------	------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의회 운영 위원회  
전문위원 김 현 속

의안 번호	4559
----------	------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: 조규식·최지연 의원(찬성의원 9인)
2. 건 명: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3. 안건 요지: 별 첨
4. 검토 의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26년 3월 일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현 숙



#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조규식·최지연 의원의 발의와 9인 의원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사유

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의 자문 독점 및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 제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입법·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소관부서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6년 3월 11일 ~ 2026년 3월 16일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(2025. 12. 4.)에 따라 입법·법률고문의 연임을 1)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
- 현행 조례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도 연임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, 특정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 소지가 있으며,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
- **검토결과**, 연임제한을 한 차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의 취지에 부합하며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.

1)

#### <참고> 법제처, 법령 입안·심사 기준 中 위원 임기와 신분규정 일부

- ◆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“연임할 수 없다.” 또는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함.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
- ◆ “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(중략)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.”